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45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하고 오기된 조문을 정리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부위원장의 직명 개정 (문화진흥국장 → 건설교통국장)
(문화체육과장 → 지역개발과장)
- 자구 수정 “다음 각호의”를 “다음 각호의 1의”로 개정

관련법규

-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

첨 부

- 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- 관련법규 발췌 1부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“문화진흥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“각호의”를 “각호의 1의”로 하며, 동항 제4호중 “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”를 “지역개발과장이 되며 서기는 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된다.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~3.(생략)</p> <p>4.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,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,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.)</p> <p>② 건설교통국장</p> <p>③각호의 1의.....</p> <p>1.~3.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지역개발과장이 되며, 서기는 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췌

【 측량법 】

제58조(지명위원회) ①지명의 제정·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에 시·도지명위원회를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지명위원회를 둔다.

②시·도지명위원회는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지명을 심의·결정하여 중앙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, 중앙지명위원회는 시·도지명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·결정한다.

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앙지명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된 지명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④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앙지명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기능·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 측량법 시행령 】

제35조(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)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시·군·구지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시·도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(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가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③시·군·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·도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5인이상으로 하고, 시·군·구지명위원회에 있어서는 3인이상으로 한다.